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과 쟁점

김미화 연구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으로 전면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시행 이후 비자발적 입원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음.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비자발적 입원치료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인프라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개정 「정신보건법」의 시행으로 향후 강제입원 환자들의 퇴원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이들을 돌볼 시설과 전문가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 「정신보건법」¹⁾ 시행 이후 비자발적 입원 비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의 강제 입원치료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비자발적 입원치료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요지로 하여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함
 - － 법 시행 후 비자발적 입원·입소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6월 23일 현재 비자발적 입원·입소 비율은 46.1%로, 법 시행 한 달 전인 4월 30일 기준 61.1%와 비교하여 15.0%p 대폭 감소하였음
- 법 시행 이후 1개월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일 평균 약 227명으로 법 시행 이전 약 202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1)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근거를 새로 마련한 법률임

〈표 1〉 입원·입소 유형별 현황 및 추이

시점	총 입원·입소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2016.12.31.	35.6%	64.4%	38.4%	61.6%	17.1%	82.9%
2017.4.30. (시설 5.15.)	38.9%	61.1%	41.6%	58.4%	20.9%	79.1%
2017.6.23. (시설 6.21.)	53.9% (+15.0%p)	46.1% (-15.0%p)	53.5% (+11.9%p)	46.5% (-11.9%p)	56.8% (+35.9%p)	43.2% (-35.9%p)

주: 괄호 ()안은 17. 4. 30. 대비 17. 6. 23. 현재 변동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7. 6)

■ 우리나라는 그 간 정신질환을 정신과 의사가 통제하고 수용시설에 장기수용하는 의료 모델을 유지해 온 바 비자발적 입원율이 매우 높고 정신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표 1〉 참조)

-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비자발적 입원율이 46%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비자발적 입원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
 - 해외의 비자발적 입원 비율은 독일 17%, 영국 13.5%, 이탈리아 12% 수준임²⁾
- 또한 2000~2014년간 OECD 국가 평균 정신질환 시설 병상은 인구 1000명당 0.93병상에서 0.69병상으로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는 0.65병상에서 0.97병상으로 증가하였음
 - OECD 국가 중 정신질환 입원 병상이 증가하는 국가는 독일,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에 불과함
 - 정신질환으로 입원하여 병원에 머무는 기간도 2015년 기준 평균 132.5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³⁾

■ 세계적으로 정신질환 관리 정책의 흐름이 지역공동체에서 생활하며 치유하도록 하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회복모델이 중심이 되고 있는 바 법 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인프라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⁴⁾

- 2016년 기준 국·공립 정신병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은 총 1,439개소인데 반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을 위한 사회복귀시설은 333개소에 불과한 수준임⁵⁾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7. 6)

3) OECD(2017), Health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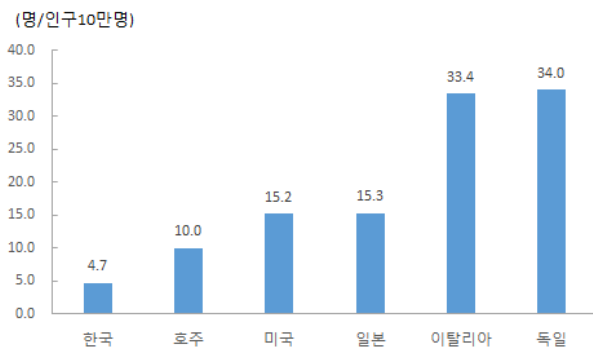
4) 경기연구원(2017. 5),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5)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 또한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residential care) 정원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임(<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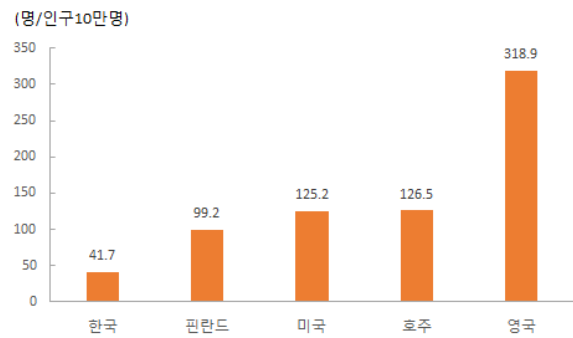
● 정신보건 전문인력⁶⁾도 미국, 영국 등의 국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그림 2> 참조)

<그림 1>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자료: WHO(2015), Mental health at last country profile 2014”

<그림 2>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 전문인력



자료: WHO(2015), Mental health at last country profile 2014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 국립정신건강센터(2015), 「2015 국가 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 개정 정신보건법의 시행으로 향후 강제입원 환자의 퇴원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이들을 돌볼 시설과 전문가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iri**

6)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인력